

의안번호	2207009
의 퇴 인	황정아 의원
회 답 일	2025. 1. 21.
추 계 번호	24F624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말에서 2031년말까지 5년 연장하고, 감면율을 인상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6년 18억원, 2031년 113억원 등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총 573억원(연평균 9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단, 현재 동 감면의 적용기한(2026.12.31.)을 고려하여,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~2031년간 발생하며, 2026년에는 감면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1년, 취득세·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기초과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(안 제45조의2)	-18	-109	-110	-111	-112	-113	-573	-95
- 취득세	-6	-35	-35	-35	-35	-35	-181	-30
- 재산세	-12	-74	-75	-76	-77	-78	-392	-6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5조의2(기초과학연구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)	○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인상 - 감면대상: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방과학연구소, 기초과학연구원, 정부출연연구기관, 한국국방연구원,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목적 부동산 - 감면율: (현행) 취득세 및 재산세 50% → (개정안) 60%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1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45조의2 (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5년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6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
 - 향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,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득 당해연도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
 - － 취득세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하도록 규정(「지방세법」 제20조)
 - 단, 현재 동 감면의 적용기한(2026.12.31.)을 고려하여,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~2031년간 발생하며, 2026년에는 감면을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만 발생한다고 가정
- 개정안에 따른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을 인상의 세수효과에 대해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
 - 동 제도는 2023년 세법개정으로 감면대상이 확대되고 감면율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실적을 조정
 - － 「지방세통계연감」에서 동 조항에 대해 세법개정 이전인 2023년까지의 실적이 가용함에 따라 세법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율 변화를 반영할 필요
 - － 2021~2023년간 국방과학연구소 등 신규 추가된 감면대상의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과 세법개정 전후의 감면율 비율을 활용하여 현행 감면대상 및 감면율 기준으로 실적을 조정
 - 향후 취득세 감면액은 2021~2023년간 조정실적 중 특이치를 제외한 연평균

수준에서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의 인상을 반영하여 발생한다고 가정

- 2021년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 가속기 시설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인 취득세 감면액 급증 효과는 배제하고 연평균 감면액 산출
- 향후 재산세 감면액은 2023년 조정실적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수준 (1.4%)으로 증가한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□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

- 동 제도는 2023년 세법이 개정되어 감면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등 확대되고, 기존 85%였던 감면율이 50%로 축소
 - 감면대상 확대: (2023년 이전)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기초과학연구원 → (현행) 국방과학연구소, 한국국방연구원, 한국해양과학기술원, 정부출연연구기관
 - 감면율 축소: (2023년 이전) 85%* → (현행) 50%
 - ※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동법 제177조의2에 따라 최저납부세제가 적용되어 동법의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, 85%의 감면율만 적용
- 개정안은 현행 감면대상을 유지하면서, 감면율을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 포함
 - 감면율: (현행) 50% → (개정안) 60%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1.12.31.

[표 2]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주요 연혁

(단위: 억원)

	2023년 이전	2024년 이후(현행)	개정안
감면대상	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- 기초과학연구원 (신규 추가)	(좌 동) - 국방과학연구소 - 한국국방연구원 - 한국해양과학기술원 - 정부출연연구기관	(좌 동)
감면율	면제(85%) - 최저납부세제 적용으로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%의 감면율만 적용	50%	60%
적용기한	2023.12.31.	2026.12.31.	2031.12.31.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감면실적)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1년 217억원, 2023년 100억원 등

- 2021년의 경우,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 가속기 시설 취득으로 일시적인 취득세 감면 급증
 - '21년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 가속기 8개동 시설 취득으로 인한 감면: 88.2억원
- 동 감면실적은 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율이 변동되기 이전의 실적
 - 국방과학연구소 등 세법개정으로 인한 신규 감면대상은 2024년부터 감면이 적용 되었으며, 감면율도 기존 85%에서 50%로 축소

[표 3]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: 2021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
계	217	91	100
- 취득세	159 ¹⁾	24	42
- 재산세	58	67	58

주: 1) 2021년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 가속기 시설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인 취득세 감면액 급증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

- (감면실적 조정) 2021~2023년간 감면실적을 현행 감면대상과 감면율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, 현행 기준 동 조항의 감면실적은 2023년 90억원 수준
 - 2021~2023년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, 기초과학연구원 등 기존 감면대상의 감면실적과 동 기간 국방과학연구소 등 신규 감면대상의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에 2023년 세법개정 전후의 감면율 변화를 비율로써 반영
 - 기존 감면대상의 경우 2021~2023년간 실적의 감면율이 85%, 현행 감면율이 50%임을 고려하여 감면율의 변화를 비율(50/85)로써 반영하여 실적 조정
 - 신규 감면대상의 경우 2021~2023년간 납부실적에 현행 감면율을 곱하여 실적 조정

[표 4]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의 조정내역
(단위: 억원)

			2021	2022	2023
기존 감면 대상	조정 전	－ 취득세(A)	159	24	42
		－ 재산세(B)	58	67	58
	조정 후	－ 취득세(C=A×50/85)	94	14	25
		－ 재산세(D=B×50/85)	34	39	34
신규 감면 대상	조정 전 (납부실적)	－ 취득세(E)	30	23	15
		－ 재산세(F)	45	51	48
	조정 후	－ 취득세(G=A×50/100)	15	12	8
		－ 재산세(H=B×50/100)	23	26	24
조정 후 실적 계		계(I+J)	165	91	90
		－ 취득세(I=C+G)	108	26	32
		－ 재산세(J=D+H)	56	65	58

주: 1. 기존감면대상: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기초과학연구원
 신규감면대상: 국방과학연구소, 한국국방연구원, 한국해양과학기술원, 정부출연연구기관
 자료: (기존감면대상 감면실적)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;
 (신규감면대상 납부실적) 국방과학연구소 등 각 기관 제출자료

- (취득세 세수효과 추계) 향후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3년(2021~2023년) 중 특이치를 제외한 조정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에 감면율 변동을 반영하여 추정
 - 향후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3년(2021~2023년) 중 특이치인 2021년 감면액을 제외한 연평균 수준을 추정한 후,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 변동을 비율

로써 반영

- 2022~2023년간 취득세 조정 감면실적의 평균(29억원)에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 변동율(60/50)로써 반영할 경우, 향후 취득세 세수효과는 2026년 6억원, 2027년 이후 35억원 수준으로 추계
 - ※ 단, 2026년의 경우, 현행 감면율이 적용됨을 감안하여 개정안에 따른 인상분(10%)만 반영
- 향후 재산세 감면액은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증가율(1.4%)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후,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 변동율(60/50)로써 반영
 - 2023년 조정실적(58억원)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(1.4%)과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 변동율(60/50)로써 반영할 경우, 향후 재산세 세수효과는 2026년 12억원, 2027년 74억원에서 2031년 7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
 - ※ 단, 2026년의 경우, 현행 감면율이 적용됨을 감안하여 개정안에 따른 인상분(10%)만 반영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산세 세수효과 추계: 2026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현행(A)	61	-	-	-	-	-
개정안(B)	73	74	75	76	77	78
세수효과(A-B)	-12	-74	-75	-76	-77	-78

(3) 추계결과

-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말에서 2031년말까지 5년 연장하고, 감면율을 인상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6년 18억원, 2031년 113억원 등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총 573억원(연평균 9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단, 현재 동 감면의 적용기한(2026.12.31.)을 고려하여,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~2031년간 발생하며, 2026년에는 감면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1년, 취득세·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기초과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(안 제45조의2)	-18	-109	-110	-111	-112	-113	-573	-95
- 취득세	-6	-35	-35	-35	-35	-35	-181	-30
- 재산세	-12	-74	-75	-76	-77	-78	-392	-65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